



국 방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협조 요청

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귀 부처 및 대학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다.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5. 7. 8.)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협조 요청
3.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게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25. 3. 18. 개정 / '25. 9. 19. 시행)되어 관련사항을 관련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1]
4.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랍니다.
[붙임#2]
6. 지난 공문(7월)과 본문내용은 동일하나, 붙임문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예하기관(부대)에 전파 바랍니다.

- 붙임 1. 「예비군법」 및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25. 9. 19.부 시행) 안내 1부.
2.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 1부. 끝.

예비전력정책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인재양성지원과장), 병무청장(동원관리과장), 동원참모부장(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장), 해군참모총장(예비군과장), 공군참모총장(동원과장), 해병대사령관(동원예비군과장)

중령 **박철환** 대령 2025. 9. 8. 최훈

협조자

시행 예비군훈련정책과-2629 (2025. 9. 8.) 접수 인재양성지원과-5698 (2025. 9. 8.)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 <http://www.mnd.go.kr>

전화번호 군) 900-5245, 팩스번호 02-748-6895 / a05-10141@mnd.mil / 대한민국 공개
일) 02-748-5245